

#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51호)

## 심사 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1. 9. 고성군 수  
나. 회부일자: 2026. 1. 9.  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6. 1. 21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열린민원과장 박경희)

#### 가. 개정이유

-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과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 사항을 「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」에 반영하고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의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공개 및 감면 상위법 근거 조문 정비(안 제12조)
- 실무협의회 관련 조항 삭제(안 제4조~안 제6조)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3조, 안 제14조)

#### 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31조, 제34조
  -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」 제23조
-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의

- 복지지원과: 성별영향평가

- 해당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41227(2025.10.29.)호]

#### 4) 기타

가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5-1707호

- 예고기간: 2025. 10. 27.~2025. 11. 17.(21일간)

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라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#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#### 가. 개정 목적

○ 본 개정조례안은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 실효성이 낮은 협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

#### 나. 주요 검토내용

○ (안 제4조~제6조) 실무협의회는 상위법에서 설치 의무가 없으며, 「국가 공간정보 기본법」 제31조 · 제3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관리 · 활용을 위해 임의로 설치된 내부 협의기구에 해당하여 조항 삭제는 자치 입법 범위 내로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음.

○ (안 제12조)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」 제23조 개정에 따라 수수료 공개 · 감면 근거 조문을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,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에 적정함.

○ (안 제3조, 안 제14조) 조문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로 조례 체계를 간소화하며, 상위법령이나 입법 취지를 침해하지 않음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실무협의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며, 법적 · 절차적 · 행정적 측면에서도 모두 적정하여 조례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1. 21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